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5953 판결 [보증채무금]

변경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변경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59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8. 29 선고 2001나69629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A 담당변호사 성BA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기CAC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9. 선고 2001나69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그 문언상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달리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특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주채무인 대출채무의 성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성립 후에 어떠한 조치나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하여 준 약속어음들이 특약에서 보증대상으로 한정된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신용보증인이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239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본 보증서에 의한 할인대상 어음은 주식회사 한D, 포DB스디자인 주식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인수한 상업어음에 한함."이라고 정하고, 그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약사항을 "본 보증서에 의한 할인대상 어음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간에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배서양도 및 인수 포함)된 상업어음에 한함."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할인어음 대출을 한 사실, 원심 판시 이 사건 ①번 할인어음 대출이 대환에 의해 이루어지기 전에 실행되었던 종전의 할인어음 대출의 약속어음과 이 사건 ② 내지 ④번 각 약속어음에 있어서 각 제1 배서인인 주식회사 한D 및 포DB스디자인 주식회사 명의의 각 배서가 소외 1 주식회사에 의해 위조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위 각 약속어음이 제2 배서인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위 각 회사들 사이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배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① 내지 ④번 각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각 할인어음 대출 당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내규에 따라 각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각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설령 사후에 각 약속어음의 각 배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각 약속어음이 신용보증에서 특약으로 정한 상업어음에 속하지 않는 이상 설령 원고가 각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각 약속어음의 할인에 의한 대출채무는 피고의 보증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용보증 특약사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 작성의 업무질의회신이 이 사건 신용보증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의 범위가 업무질의회신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에는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